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수산물안전과를 설치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하던 소금산업 관리 및 육성 등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해양수산부에서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각각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시행, 해양수산부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시행)되고,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2. 22,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업무의 절차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4) 법제처 심사 전

- 1 -

해양수산부령 제 호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한다.

제15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16조제5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및 제6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

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으로 “위하여”를 “위해”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개발 중인 해양수산부 소관 인증표시의 통합도형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별표 4의2와 같다”로 하고,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천일염인증의 심사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제1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을 한 천일염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제2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 4 -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3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5제1호나목1)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표 9제2호가목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 6 -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인증을 한 천일염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의 갱신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천일염인증기관”을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당 천일염 인증을 한 기관의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계신고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5 -

한다.

별지 제19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중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 서식 중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하고, “해양수산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5호 서식 중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천일염인증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 7 -

제24조 및 제30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4조, 제6조, 제13조, 제16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청·지정·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천일염 인증품 표시의 규격 및 방법 (제21조제4항 관련)

1. 우수천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의 표지도형



2. 천일염인증 표시 제작 방법

- 표시 도형의 가로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 사이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 길이는 $0.95 \times W$ 의 비율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 부분에만 해당한다) 사이의 간격은 $0.1 \times W$ 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흰색 모양 하단부 좌측 테두리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테두리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 \times 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국문 및 영문 글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시 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한글 및 영문의 서체는 표지와 다른 임의의 서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표시 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랑색, 빨강색 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 표시 도형 내부에 적힌 “우수천일염인증” 글자 색상은 표시 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해양수산부”의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 표시 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8 -

- 9 -

아. 표시 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 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자. 표시 도형 밑 또는 좌·우 옆면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3. 천일염인증 표시방법

가. 우수천일염인증 표시는 우수천일염인증을 받은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나.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천일염인증 표시는 제품 상표, 포장, 송장 또는 거래명세표 등에 붙이거나 함께 인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8일
신청인	기관명 또는 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신청 내용	교육훈련 분야		
	교육 훈련 시설	교육시설	
		인력	
		그 밖의 시설	
	그 밖의 참고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1부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검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결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지정서 작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지정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 10 -

- 11 -

제 호

교육훈련기관 지정서

- 기관명 또는 단체명 :
-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재지 :
- 교육훈련 분야 :

「소금산업 진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법인명(단체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전문인력양성 분야			
	양성 시설	교육장		
		실험실		
		연전 실습장		
		강사		
그 밖의 참고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1부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1부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1부				
	5. 소금관련 교육훈련 수행실적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 검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 결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 지정서 작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시·도 (소금 담당부서)	→ 지정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법인명(단체명) :
-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소재지 :
- 교육과정 :

「소금산업 진흥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컨설팅 분야		
	그 밖의 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컨설팅 관련 각 분야(경영·기술·재무·회계 등)별 전문인력 보유 현황 1부	수수료 없음			
	2. 그 밖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검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결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지정서 작성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지정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4. 컨설팅 내용 :
5. 시설현황 :

「소금산업 진흥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소재지	본 사		
	사 업 장	(전화번호:)	
		(전화번호:)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용권만 해당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의 확보 현황 1부 4. 품질검사에 관한 자체규정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검 토 (현장조사)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결 재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지정서 작성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지정서 발급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품질검사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4. 대표자의 주소 :
5. 지정일 :
6. 검사업무 범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천일염인증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갱신 신청서 【천일염인증 유효기간 연장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허가번호	상호(영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염전시설 (소재지)	소금창고, 해 주, 결정지의 바닥 소재,
	생산능력	
	생산방식	
	시설연도	
그 밖의 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3항에 따
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1부 2. 소금 정밀검사 성적서 1부 3. 제조공정도 1부 4. 우수천일염인증서(유효기간 갱신 및 연장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인증 신청 시: 800,000원 갱신·연장 신청 시: 30,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검 토 현장 출장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결 재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인증서 작성 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인증서 발급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우수천일염인증서

1. 업 체 명 :

2. 허가번호 :

3. 소 재 지 :

4.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5. 대표자의 주소 :

6. 품 목 :

7. 유효기간 :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천일염인증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내용

본 사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

(전화번호:)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법인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현장조사) → 결 제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금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천일염인증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의 성명 : (생년월일)

4. 대표자의 주소 :

5. 지정일 :

6. 인증업무 범위 :

「소금산업 진흥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천일염인증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허가번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염전시설

총 면 적

㎡

염전시설

소금창고

㎡

해 주

㎡

결정지

㎡

증발지

㎡

저수지

㎡

시설자재

소금창고

해 주

결정지

제조시설

생산능력

승계 사항

구 분

승계 전

승계 후

비 고

기관 명칭

성 명

그 밖의 참고사항

「소금산업 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천일염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우수천일염인증서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제11조에 따라 지원승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의 경우
1)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2)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다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 제 → 인증서 작성 → 인증서 발급

신고인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천일염인증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3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	② -----			
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			
훈련을 실시하는 장소가 둘 이	-----			
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	-----			
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			
“시·도”라 한다)에 있는 경우	-----			
에는 <u>해양수산부장관</u> 에게, 하나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	-----			
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			
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	-----			
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	-----			
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	-----			
하여 <u>제출하여야</u> 한다.	----- <u>제출해야</u> -----.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1. -----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2.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	3. -----			
함된 운영계획서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③ -----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교육훈련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훈련기관 지정서를 <u>발급하여야</u> 한다.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장소가 둘 이상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u>해양수산부장관</u> 에게, 하나의 시·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제출하여야</u> 한다.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1. 교육시설 보유 현황	1. -----
2.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 현황	2. -----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3. -----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
5. 소금 관련 교육훈련 수행실	5. -----
	----- <u>제출해야</u> -----.

적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 사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 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u>발급</u> <u>하여야</u> 한다.	③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 <u>발급</u> <u>해야</u> -----.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 1항에 따른 컨설팅 실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제6조(컨설팅 실시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u>해양수산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 할 것	2.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u> <u>장</u> ----- ---
② 컨설팅 실시 기관으로 지정 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 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를 <u>해양수산부</u> <u>장관</u> 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② ----- ----- ----- ----- ----- ----- ----- <u>국립수산물</u> <u>품질관리원장</u> -- <u>제출해야</u>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지정기준에 맞는 자를 컨설팅 실시 기관으	③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컨설팅 실시 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u>해양수산물장관은</u> 컨설팅 실시 기관이 전문인력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1년 이상 컨설팅 실적에 없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① <u>해양수산물장관</u>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맞지 아니하는 해역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간 및 범위를 정하여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한다. ② <u>해양수산물장관</u>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사에게 매월 그 관리 상황에 대	발급해야-- ④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제13조(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의 지정기준 등) ①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알는 ②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식용천일 염생산금지해역으로 지정된 해 역에 대하여 금지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안전성 조사 결과 안 전관리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 에는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 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③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4. 여행자가 외국에서 휴대하여 들여온 것 중 자가소비용 또 는 관상용으로 인정할 수 있 는 소금으로서 <u>해양수산부장 관</u>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4. ----- ----- ----- <u>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u> ----- -----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 보급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법 제32조에 따라 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과 천일염 생산공 정의 표준화를 위하여 관련 연 구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염전 등의 표준모델 개발 · 보급 등) ① <u>국립수산물품질 관리원장</u> -----	5. 무상으로 들어오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 중 그 표 시가 명확한 소금으로서 <u>해양 수산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하 는 기준을 충족하는 소금	5. ----- ----- <u>국립 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② <u>해양수산부장관</u> 은 개발된 표 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의 보급 을 확산하기 위하여 염전 등의 표준모델 및 표준생산공정을 도 입하려는 소금사업자에게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위해-----	6. 그 밖에 <u>해양수산부장관</u> 이 품질관리 및 위생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 여 고시하는 소금	6.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법 제35 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 금을 말한다.	제15조(품질검사의 생략) ----- ----- -----.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 청) ① ~ ③ (생 략) ④ <u>해양수산부장관</u> 은 품질검사 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20호서 식의 품질검사기관 지정서를 발 급하고, 그 명칭·주소 및 사무 소 소재지 등을 <u>공고하여야</u> 한 다.	제16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신 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u>공고해야</u>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⑤ -----

정한 사항 외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u>해양수산 부장관</u> 이 정하여 고시한다.	----- <u>국립수산 물품질관리원장</u> -----.	천일염인증"이라 한다)을 받으 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법 제43 조제1항에 따른 천일염인증기 관(이하 “천일염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 ----- -----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또 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천일 염인증기관----- ----- <u>제출해야</u> -----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방법 등) ① ~ ④ (생 략) ⑤ 품질검사기관은 품질검사를 한 후 품질검사 결과서를 5일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품질검사의 기준·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해야</u> -----.	②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으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 염생산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것으로 판정된 천일염에 대하여 우수천일염인 증을 하여야 한다.	②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또는 <u>천일염인증기관의 장</u> ----- ----- ----- ----- <u>해야</u> -----.
1. (생 략) 2. 검사에 불합격한 소금의 경 우: 불합격 사유 및 내용 등을 신청인과 <u>해양수산부장관</u> 및 해당 염전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알릴 것	1. (현행과 같음) 2. -----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 원장</u> ----- -----	③ 천일염인증기관에 우수천일염 인증을 신청한 자는 천일염인증 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심사 를 하기 위하여 시료를 요청하 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 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③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u> 또는 천 일염인증기관에-----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u>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의 장- ----- <u>위해</u> ----- ----- <u>제공해야</u> ----- -----.
⑥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소금의 불 합격 처분 사실을 보고받은 경 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법 제5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금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 록 관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 ----- -----.	④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에 따라 우수천일염인증을 하였 을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④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또는 <u>천일염인증기관의 장</u> ----- -----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우수 천일염에 대한 인증(이하 “우수	제21조(우수천일염인증 신청 등) ① ----- -----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하여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 을 받은 우수천일염인증품의 포 장·용기에 표시하는 표시의 규 격 및 방법은 <u>개발 중인 해양수 산부 소관 인증표시의 통합도형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u>	-----발급해야-----. ⑤ ----- -----별표 4의2와 같 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u>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천일염인증의 심사 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천일염인증번호 부여방법 및 표시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 여 고시한다.</u>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우수천 일염인증(이하 “천일염인증”이 라 한다)을 갱신하려면 천일염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 청서를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 설>	제24조(천일염인증의 갱신 등) ① ----- ----- ----- ----- -----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 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 관-----제출해야---. 다만, 인

	증을 한 천일염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수천일염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발급해야--.
③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천일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천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인증을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천일염인증기관-----제출해야-----.
	다만, 인증을 한 천일염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다른 천

④ <u>천일염인증기관</u>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u><신 설></u>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천일염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u>해양수산부장관</u>에게 <u>제출하여야</u> 한다. 1. 정관(법িন্ন만 해당한다) 2. 사업계획서 3.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천일염인	<u>일염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u> ④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또는 <u>천일염인증기관</u>-----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천일염인증의 갱신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이 정하여 <u>고시</u>한다. 제25조(천일염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제출해야---. 1. ----- 2. ----- 3. ----- ----- ③ <u>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u>---
--	---

[illegible]

